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36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서명옥・백종헌・박준태

서천호 · 배준영 · 박정하

조정훈 • 김석기 • 강선영

강명구 · 김용태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

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생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현		
략)	행과 같음)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		
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		
	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